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10 1871
결재일자	2015.11.23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보도여부	

주무관	식품위생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
유종면	문상윤	임종배	11/23 이인영
협 조			

2015 모범음식점 지정(재지정) 운영계획

2015.11.19.

강 북 구

2015 모범음식점 지정(재지정) 운영 계획

우리구 관내 음식점중 위생 환경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과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(재지정)하고자 함

1 관련근거

-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
- 보건복지부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

2 추진방향

- 모범음식점의 지정·관리 및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위생 및 친절서비스에 관한 영업주들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고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음식점 수준 향상 유도
- 우수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시설 및 서비스 환경 개선 도모
- 모범음식점 지정 요건 강화(서울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 결과 반영 및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%이내 지정)

※ 2015.11월 현재 일반음식점 3,780개소 중 115개소 지정중(3.04%)

3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

▣ 업태 및 면적 현황 (2014. 11. 20 현재)

● 업태별 현황

(단위:개소)

구 분	계	업 태 별				
		한식	일식	양식	중식	기타
계	115	99	8	3	5	-

● 면적별 현황

(단위:개소)

구 분	계	면 적 별(m ²)			
		100미만	100~199	200~299	300이상
계	115	76	16	10	13

4 세부추진계획

▣ 기존 모범음식점 재심사

- 서울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완료 결과를 재심사에 같음
⇒ 60점 미만 모범음식점에 대해 지정 취소 권고

▣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접수 및 현지조사 실시

- 신청기간 : 2015. 1월부터 상시접수(2015.11.20.접수분까지)
- 신청접수 : 강북구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
- 신청대상 :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(※개업후 6개월이 경과한 기한 삭제)

● 신규 신청업소 : 15개소

연번	업종	상호	대표자	주메뉴	소재지	전화번호
1	일반	갈비예찬	김현대	소갈비	도봉로 156(송중동)	983-8900
2	일반	고기가 좋은 사람들	김미영	삼겹살	덕릉로28길 72(미아동)	980-9435
3	일반	늘푸른목장	정미자	고기(소돼지)	월계로53-3(송중동)	980-8679
4	일반	우리집삼시세끼	노하정	청국장	송인로 57-1(송천동)	945-3037
5	일반	크을농	서애숙	산채음식	솔샘로67길 142(송천동)	902-3360
6	일반	통영	이가연	산품장어	덕릉로 93-10(번1동)	902-9202
7	일반	고향가마솥 곰탕	양진모	곰탕	한천로131길 36(번1동)	998-8815
8	일반	황금성	전옥경	짜뽕	덕릉로 62(수유1동)	999-3444
9	일반	강북기사식당	김순남	김치찌게	한천로 1142(수유2동)	992-2544
10	일반	명동칼국수샤브샤브	김선자	샤브칼국수	한천로 1120(수유2동)	903-4645
11	일반	왕가	황동성	갈비	노해로8길 22(수유3동)	907-9277
12	일반	귀품찬	곽민근외	소양념갈비	도봉로 313(수유3동)	995-009213
13	일반	쿠우쿠우	배호근	초밥	도봉로 323(수유3동)	993-6274
14	일반	안동인 안동찜닭	마진찬	안동찜닭	삼양로149길 33(우이동)	900-1322
15	일반	바람이부네	김혜리	된장찌게	4.19로 40-3(우이동)	993-5161

● 현지조사 : 2015.11.23 ~ 2015.12.3

● 점검방법

- ▶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에 의한 현지조사
- ▶ 담당 공무원과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현지조사 실시
- ▶ 2015년 위생등급평가결과 참고(등외업소는 점검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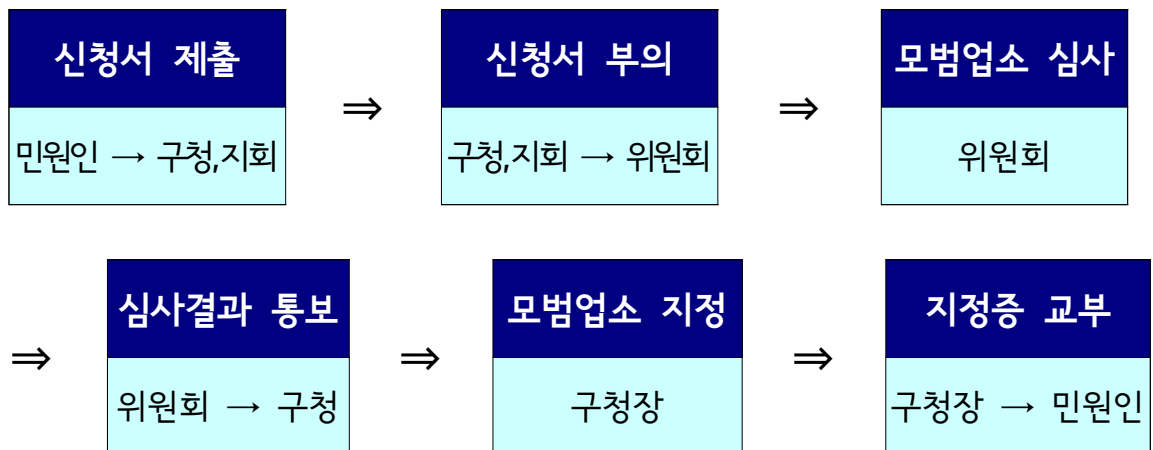
▣ 모범음식점 지정기준

● 지정기준

- ▶ 위생 및 친절서비스
 - 시설(주방, 홀, 화장실, 식자재 창고 등)의 청결도
 - 종사원의 위생 및 친절도

- 외국어 메뉴안내 및接客수준
- 기타 음식의 맛, 역사성, 고객의 평판 등
- ▶ 「좋은식단」 우수실천업소
 - 권장 반찬 가짓수 준수
 - 면류 1~2가지, 곱탕류 2~3가지, 전골류 3~4가지
 -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
 - 1회용품 안쓰기 등
- 우선지정 대상지역
 - ▶ 주요관광지, 관광호텔, 숙박업소 주변
 - ▶ 역, 터미널,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
- 지정제외업소
 - ▶ 호프,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
 - ▶ 뱀탕,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 업소
 - ▶ 특정 요일,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을 하는 업소

□ 지정절차



5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회 개최

- 심 의 : 강북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
- 안 건 : 모범음식점 지정 등
- 심의회 개최
 - ▶ 일 시 : 2015. 12월중 15:00~17:00 (예정)
 - ▶ 장 소 :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회의실
 - ▶ 내 용
 - 기존 모범음식점 : 서울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 결과 반영(60점 미만 업소 재지정 취소) 하여 재지정 및 취소
 - 신규 모범음식점 : 서울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 결과 반영(등외업소 제외) 및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서류심사 후 신규 지정

6 모범음식점 지정(재지정) 및 취소

- 모범음식점 (재)지정 및 취소
 - ▶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에 의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
 - ▶ 서울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결과 반영
 - ▶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 - ▶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
- 지정증 및 모범업소 표지판 교부(재교부) 및 회수
 - ▶ 교부(재교부)대상 : 신규지정 모범음식점 및 훼손 분실 모범음식점
 - ▶ 회수 대상 : 재지정 취소 업소(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)

7 모범음식점 지원

-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과 필요한 물품·기구 지원
-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
 - ▶ 공공기관의 각종 회식 및 모임·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
 - 부서별 협조공문 또는 안내문 발송 및 보건위생과 솔선 이용
- 식품진흥기금 우선용자
- 용자한도
 - ▶ 영업시설개선자금 : 8천만원 한도
 - ▶ 모범음식점육성자금 : 3천만원 한도
 - ▶ 화장실개선자금 : 1천만원 한도
- 용자조건 : 연리 2%(화장실개선자금 연리1%), 1년거치 2년 균등 상환

8 행정사항

-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 협조 요청
 - ▶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

- 첨부 1. 2015 모범음식점 현황(2015. 11. 20 기준) 1부.
2.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점검표 1부. 끝.